

【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】

자퇴 또는 제적 학생 중 학업 이수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재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학업 이수 기회 부여를 위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

1. 재입학 신청 자격

가. 자퇴 또는 제적(미등록·미수강·미복학)된 자

나. 다른 학교에 학적을 가진 자

다.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된 자로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

※ 1. 학칙 제31조 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. 다만,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한 자가 다시 동 31조 6호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

2.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

2. 재입학 모집 인원: 6명 이내(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, 별도 기준 적용)

3. 재입학 일정 및 제출 서류

가. 재입학 일정

| 지원서 접수 | 재입학 허가 | 등록 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25. 1. 15.(수) ~ 1. 23.(목) | '25. 2. 5.(화) 예정 | '25. 2. 24.(월) ~ 2. 28.(금) |

나. 재입학 신청 방법: 학생역량시스템 - 학적정보 - 재입학 신청

다. 제출 서류: 재입학 지원서, 제적 전 학적부, 제적 전 성적증명서

4. 유의 사항

가. 제적 시 학부, 전공(학과)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, 다만, 제적 시 학부, 전공(학과)이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부, 전공(학과)으로 허가할 수 있음

나. 재입학 학생은 재입학 학년의 재학생에게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따른다. 다만, 재입학자는 신청에 따라서 최초 입학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음

다.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(분할납부 제외)

5. 문의: 교학지원처 학적담당(041-731-3214)

2025. 1. 15.

교 학 지 원 처